

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 '노동조합법') 해석지침(안)을 마련함에 있어,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(안)」 행정예고

1. 추진배경

- 노동조합법이 2025. 9. 9. 개정되어 2026. 3. 10.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,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, 해석지침 [제2조제2호(사용자) 및 제2조제5호(노동쟁의)]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제2호 사용자 확대에 관한 지침(안)

-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 신설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, 이에 새로 확대된 사용자인 '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'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마련

나.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관한 지침(안)

-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대상에 ❶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, ❷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❸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포함된바, 새로 확대된 '노동쟁의' 대상에 관한 판단기준 등을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지침(안)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1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
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
- 전자우편: bart7780@korea.kr
- 팩스: 044-202-8076 또는 0503-8803-0059 (전자팩스)

4. 그 밖의 사항
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 →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(☎ 044-202-7609, 76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